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1. 14.(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64-542)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며,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수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편PP에게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국정 과제와 '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일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보시면 순수외주제작에 대한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에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비중요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0일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종편 4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별도로 했으며, 독립PD협회나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관련한 이해관계자에게도 별도로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향후일정 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에 모든 일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종편도 현재 외주제작을 통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광고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종편PP와 타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수렴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체로 종편사업자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가 메일 내지는 문서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없다고 모두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64-543)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8년 5월 30일 「방송법」 일부개정안 위원회 보고, 2018년 6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7월 17일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그리고 9월 28일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은 자율 협의로 결정되어야 할 콘텐츠 거래

가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미 재송신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이므로 재송신이 중단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음, 재송신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기관이 해당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개입을 하더라도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직권조정제도 도입 대신 불법재송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요망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율 협상에만 맡겨둘 경우 방송중단 사태가 올 수 있어, 직권조정 제도 도입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바람직, 재송신 대가는 여전히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진행, 지상파의 재산권 침해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재송신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도입 필요, 직권조정제도 자체는 분쟁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효과를 가지므로 가치중립적임. 제도 도입 시, 유료방송 또는 지상파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모두 절차적·실체적 부담, 유료방송사의 부족한 협상력 보완, 지상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고 판단되나, 재송신 관련 제반 제도(의무 재송신 대상 채널 범위 확대, 적정한 재송신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개선이 수반될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입니다. 유지·재개 명령 기간(최대 60일) 이후까지 분쟁이 장기화되어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 필요성 인정,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당사자 간 조속한 협상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사전 예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2015년에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제도적인 결함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허 욱 부위원장

- 분쟁 당사자 간 어느 한 일방만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어느 일방만 신청하면 됩니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가 신청할 줄 알았는데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름 이후에나 신청이 되어서 그 15일 동안 정부가 조정을 개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조정 개시라도 직권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실질적으로 직권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내용이군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간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양 당사자 간 치열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분쟁 장기화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분쟁 당사자 간 조속한 협상을 지원해서 시청권 침해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의 블랙아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늦은 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권 보호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직권 중재하는 권한을 신설합니다만 그것의 최종 목적은 시청권 보호입니다. 즉,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방송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용자들을 위해, 즉 시청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업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일은 없습니다. 즉, 국민들의 시청권을 먼저 생각하고 분쟁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많이 위축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사업자들이 그렇게 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처럼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분쟁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장에서 사업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보완 설명드리면 어쨌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된 긴박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직권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권조정안을 내더라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상파들의 의견을 보면 '자율 협의로 결정되어야 할 분야에 정부가 왜 과도하게 개입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이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소위 콘텐츠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구체적인 경우는 봐야 하지만 방통위가 가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자율 협상에 개입해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은 시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요. 앞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시청권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협상기술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양쪽 입장이 팽팽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나치게 요구하고, 또 한쪽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늘 팽팽하게 맞서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해외 선진국은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협상이 다 타개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협상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는데 지상파는 나름대로 소위 시쳇말로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블랙아웃되어 방송이 끊어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요?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뒤늦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가격 결정까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자율협상의 수준을 넘는 범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리가 가격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송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은 재정 제도와는 달리 조정이기 때문에 재판상 효력이 없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파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중단 사태로 인한 시청자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추진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판매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또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범위는 이통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는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매유형은 이통사가 직영하는 사이트 그리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판매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입방식으로는 홍보내용을 온라인상으로 보고, 온라인에서 바로 가입하거나, 이용자를 영업장으로 유도하여 가입하는 행위가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입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통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아야 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 대리점의 경우에도 인증서가 이용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증서 마크 그리고 사전승낙 마크를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판매자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온라인상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의 경우에 온라인판매점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판매점명과 함께 거래 대리점명도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관련입니다. 공시지원금을 직접 게시하거나 이통사가 공시하는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게시토록 하였고, 판매자가 판매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 이상의 요금제를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표시토록 하고,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금액과 공시

지원금과의 혜택 차이를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관련해서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그리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게시하면 안 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의 음어사용 행위를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통기한과 관련해서 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용자에게 D+3일 이내에 개통절차가 완료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은 달성하거나 가입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였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시지원금 등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과다 차별지급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은품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에게 판매촉진용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추가지원금, 즉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계약체결 제한과 관련해서는 판매자가 이용약관과 별도로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에 대한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 이행방안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그리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이동통신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이후에 12월 까지 판매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해당되겠고, 마지막으로 재검토 기한에 대해서는 '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보고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뺏다방, 즉 공식 인증 절차 없이 단말기 판매정보를 게시나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 그리고 SNS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판매자의 정보공개,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공시지원금 준수 등 4가지 범주의 판매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온라인판매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보고한 바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율조치 신고사이트 운영과 판매자 교육,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고자 합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4기 방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께서 수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로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들이 다루어지겠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입법활동도 이어집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통신 정책과 행정과 관련된 기형적 정부 구조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려 왔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는 이미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있고, 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에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규율하고 대처해야 할 정부의 정책 행정체계는 이원화·삼원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 행정 통합체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편법적이고 기형적으로 기능을 쪼개서 조직을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 적폐의 산물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쳐야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 행정기능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바퀴의 복원, 그리고 사업자들의 이중 부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책 행정 통합체계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부 내 논의와 국회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원, 감사원과 함께 대통령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소속기관의 이런 기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려 깊은 고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은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속도감 있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어느 부처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하는 전체 정부 기능의 효율성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 명심하고 저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께서 가끔 제기하시는 문제 저희 위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서 정부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이 이원화되어 있고, 또 방송의 일부는 문화부에도 있어서 같은 사안을 여러 개의 정부부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들이 업무가 약간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같은 대상을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영역이 약간 겹치는 경우는 있지만 명백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규제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업무를 다루는 방송·통신의 업무가 과기정통부에도 있고 문화부에도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업무의 분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과 통신의 규제업무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OTT를 비롯해서 융합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것을 어떠한 분리를 통해서는 다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표철수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언급을 잘해 주셨는데 조속히 이런 문제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알려지고 어떤 결심을 거쳐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규제업무들이 일원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표철수 위원님 발제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부처 이기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권한과 직무를 가져가야겠다, 뺏고 뺏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정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특히 방송에 관한 것은 방통위에서 규제를 하고 진흥에 관한 것은 다른 부처에서 하고 규제와 진흥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력인데 콘텐츠에 관한 업무도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콘텐츠 진흥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그런 데 배정되어 있고 방통위는 가장 방송에 관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참 답답한데 이번에 문제제기를 하신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업무조정을 통해서 조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기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4분 폐회 】